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7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나경원 · 김미애 · 송석준
인요한 · 강승규 · 박덕흠
고동진 · 구자근 · 광규택
이인선 · 조배숙 · 김민전
안철수 · 김종양 · 추경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으며,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해당 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나 국가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의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를 “제5호,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 ----- -----2028년 12월 31일----- -----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는 내국인이 <u>2025년 12월 31일</u>	<u>-----2028년 12월 31</u>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u>일-----</u>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	<u>-----</u>
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	<u>-----</u>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u>-----</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	<u>-----</u>
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	<u>-----</u>
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	<u>-----</u>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	<u>-----</u>
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	<u>-----</u>
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	<u>-----</u>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	<u>-----</u>
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u>-----</u>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u>-----</u>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	<u>-----</u>
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	<u>-----</u>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u>-----</u>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u>-----</u>
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u>-----</u>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	<u>-----</u>
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	<u>-----</u>
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u>-----</u>
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u>-----</u>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u>-----</u>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u>-----</u>
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	<u>-----</u>

도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 4. (생략)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
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2
028년 12월 31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2028년 12월 31일

③

-----2028년 12월 31일-----

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 ⑧ (생략)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

_____.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_____

[illegible]

는 출자지분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 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 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 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출 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 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 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 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u>2025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	3. ----- ----- ----- ----- ----- ----- ----- ----- ----- ----- ----- ----- <u>2028년 1</u> <u>2월 31일</u> ----- ----- 가. ~ 마. (현행과 같음)

4. -----

202
8년 12월 31일-----

[illegible]

6. -----

-----2028

<u>5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u>년 12월 31일</u> ----- ----- -----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 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이 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 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 업전문회사에 <u>2025년 12월 31</u> <u>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 ----- ----- -----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 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 장기업으로부터 <u>2025년 12월 3</u> <u>1일까지</u>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	④ ----- ----- ----- ----- ----- ----- ----- ----- <u>2028년 12월</u> <u>31일</u> ----- -----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illegible]

② -----2

028년 12월 31일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 2. (생략)

③ ~ ⑥ (생략)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8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

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1. -----

2028년 12월 31일

[illegible]

자대상기업에 <u>2025년 12월 31</u> 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u>2028년 12월 31</u> <u>일</u> ----- -----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 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 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u>2025년 12월</u> <u>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 한 주식등	3. ----- ----- ----- ----- ----- <u>2028년 12</u> <u>월 31일</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 부터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받 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 ----- ----- ----- ----- <u>2028년 12월 31일</u>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한다.	⑦ ----- ----- <u>2028년 12월 31일</u> ----- -----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illegible]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2028년 12월 31일-----

[illegible]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
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
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2028년 12월 3
1일-----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2028년 1
2월 31일-----

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⑥ ~ ⑧ (생략)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
행과 같음)

(2) -----

2028년 12월 31일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 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 ⑥ (생략)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
역세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
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
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 밀
역세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_____

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
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
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

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 2. (생략)

② ~ ⑨ (생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
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
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
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2028
년 12월 31일-----

---2031년 12월 31일-----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

---2028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
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
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
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
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
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
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
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
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 3. (생략)

② ~ ⑦ (생략)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illegible]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
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략)

② ~ ⑨ (생략)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
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2028년 1
2월 31일-----

_____.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2. 2030년 1월 1일-----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illegible]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
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
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
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
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
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
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
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하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② 2030년 1월 1일-----

-----.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

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1. ~ 22. (생략)

③ ~ ⑤ (생략)

-----적용하며, 제12호는 20

-----적용하며, 제12호는 20
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
에만 적용한다.

1. ~ 13. (현행과 같음)

② -----

2028년 12월 31
일-----

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